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761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2. 16. C에게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70,44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C로부터 C가 서명날인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당시 C와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도장을 찍은 사람은 C라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와 직접 연락하여 피고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